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21353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213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4. 9 선고 2002나3812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나AA(소송대리인 변호사 임B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윤C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BB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4. 9. 선고 2002나38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2003. 4. 10.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1억원에 대한 2003. 4. 1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이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재일교포인 소외 김DA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극EA개발 주식회사(이하 ‘극EA개발’이라 한다)를 설립한 뒤, 그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소외 유DB과 동업하기로 하여 유DB으로부터 250억원을 투자받고 다시 50억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극EA개발의 주식 51%를 양도하였다가 유DB과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1997. 7. 27. 당시 건설중이던 골프장을 남·북으로 각 18홀씩 분할하여 북쪽 코스는 유DB이 설립한 삼OO개발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유DB은 김DA에게 극EA개발의 경영권과 주식을 반환하되, 김DA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극EA개발 소유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유DB 등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1998. 10.경 위 약정에 따라 골프장의 남쪽과 북쪽을 분할하는 절차가 마무리되자, 김DA은 남쪽 코스를 매각하여 유DB과의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할 의도로 유DB에게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극EA개발의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극EA개발을 사직하고 자신을 도와서 유DB과의 채권채무정산 및 남쪽 골프장 관리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원고와 김DA을 대리한 그의 처남인 피고 사이에 1998. 12. 28. 아래 다.항과 같은 내용의 퇴직위로금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는 위 지급각서의 내용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김DA은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으로 합계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3,000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1억원은 1999. 12. 28. 내에 지급하며, 1억 7,000만원은 극EA개발과 관련하여 김DA과 유DB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완전 정산된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김D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1999. 2.경 극EA개발에서 퇴직한 뒤, 소외 송D과 함께 남쪽 골프장을 관리하여 오다가 2000. 1. 초경 김DA으로부터 유DB과의 채권채무정산 담당자로 소외 김DD과 함께 위임을 받아서

김DD을 도와 채권채무정산 작업을 하였다.

마. 한편 김DA은 1999. 2.경 유DB을 상대로, 유DB이 1998. 11. 10. 극EA개발 소유 골프장 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경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고, 유DB도 김DA을 무고로 고소하였다가 2000. 5. 17. 서울지방법검찰청으로부터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각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가 김DA의 항고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받고, 유DB은 김DA과의 합의를 이유로 자신의 항고를 취하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제1항과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김DA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김DA과 유DB 사이의 채권채무정산 및 남쪽 골프장의 관리를 돕기 위하여 극EA개발에서 퇴직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김D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지급기일이 경과한 퇴직위로금 잔금 중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 중 1억 7,0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각서에서 위 금원을 ‘극EA개발과 관련하여 김DA과 유DB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완전 정산된 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그 각서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김DA과 유DB 사이의 극EA개발과 관련한 채권채무가 협의에 의하여 완전 정산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데, 유DB이 김DA에 대한 무고 고소사건을 김DA과의 합의를 이유로 취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김DA과 유DB 사이의 채권채무가 협의에 의하여 완전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위 1억 7,000만원은 김DA과 유DB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두 사람 사이의 골프장 분할합의에서의 내용에 따라 완전히 정산된 후에야 지급될 수 있는 금원인데 그 분할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 9. 23.자 준비서면에서 위 금원은 김DA과 유DB 사이의 채권채무가 그 방식과 내용을 가리지 않고 완전히 정산될 때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김DA과 유DB 사이의 채권채무 정산은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수령 등으로 이미 완료되었다고 다투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의 위 가.항과 같은 판단에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을 판단하여 변론주의에 위배하거나 원고에게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개정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의무는 민사채무이고 그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정함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 1억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는 것임에도,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3. 4. 10.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2003. 4. 10.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1억원에 대한 2003. 4. 10.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부분을 인용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위에서 취소하는 제1심판결의 일부지연손해금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지급물 110,330,900원은 위에서 이 법원이 인용하는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여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